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2. 11. 01.	
		개정번호	4	페이지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학과 구조조정 위원회

제3장 학과 구조조정 절차


제4장 학과별 성과지표에 따른 교원 보수 삭감 기준

제5장 폐과 및 후속 조치

부칙

작성부서	기획예산처	제정일자	2016. 02. 18.
------	-------	------	---------------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기획예산처장	교무학생처장		산학입학처장		사무처장	
직 책	담당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2. 11. 01.
		개정번호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수요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학과의 구조조정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학과 구조조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이라 함은 대학 학과의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 및 정원조정 등과 그에 따른 교원의 소속변경 등을 포함한 학과의 구성을 조정함을 의미한다.
2.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통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하나의 학과로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폐과”라 함은 학칙 제4조에서 정하는 학과의 입학정원이 0명이 되는 학과를 의미한다.
5. “명칭변경”이라 함은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정원조정”이라 함은 학과 입학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학과 구조조정의 적용대상은 학칙 제4조에서 정하는 학과로 한다.
 ② 학과 구조조정의 적용 범위는 본 규정 제2조의 학과 신설, 통합, 폐과, 학과 명칭변경 및 정원조정 등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교원의 신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구조조정의 원칙) 학과 구조조정은 다음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구현을 위한 조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
3. 대학 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
4.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2장 학과 구조조정위원회

제5조(학과 구조조정위원회 설치) 대학 학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과 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2. 11. 01.
		개정번호	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조조정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조조정 학과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과별 자구노력계획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 결정에 관한 사항
5. 학과별 교원에 대한 보수 삭감 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교무학생처장, 산학입학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계열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명 하는 5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정원조정 대상 학과 소속 위원은 소속학과 정원조정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과 구조조정 절차

제9조(주무부서) 학과 구조조정 업무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다.

제10조(학과 구조조정 절차 및 시기) ① 기획예산처는 매년 10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후 모든 학과에 공표한다.

- ② 기획예산처는 제11조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12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학과를 선정하여 해당 학과에 통보한다.
- ③ 구조조정 대상 학과는 자구노력계획서를 작성하여 선정 통보를 접수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2. 11. 01.
		개정번호	4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구조조정 요구 학과는 구조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1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④ 구조조정 대상 학과 중 대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조조정 학과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조조정 대상 학과 선정기준) 구조조정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 중 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2호에서 5호까지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입생 충원율)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대학평균 미만인 학과. (단 당해연도 신입생 충원율은 수시모집 충원율을 기준으로 한다.)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2. (재학생 충원율)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대학평균 미만인 학과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3. 취업률(정보공시기준) 2년 연속 대학 평균 미만인 학과
4. 학과 경쟁력 분석 지표, 원가분석 결과 등 학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학과
5. 사회, 산업수요 등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낮은 학과
6. 학과 자율적으로 학과의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조정 등 구조조정을 신청한 학과

제12조(구조조정 학과 및 폐과 선정) ① 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 학과에서 제출한 자구노력 계획서와 구조조정 대상 학과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2월 말까지 구조조정 학과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 대상 학과 중 폐과의 선정기준은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50% 이하인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교무위원회 등 심의·의결) ① 총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교무위원회 부의하고 심의, 의결한다.

② 구조조정 학과 및 폐과는 교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4조(학과 구조조정 결과 공개) ① 총장은 학과 구조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과 구조조정 결과 폐과가 결정된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학과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2. 11. 01.
		개정번호	4

제4장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보수 삭감 기준

제15조(보수 삭감의 기준) 학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교원의 보수 삭감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등 학과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학과별로 그 소속 교원에 대한 보수 삭감을 진행한다.

제16조(보수 삭감 비율) 학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교원의 보수 삭감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등 학과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학과별 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폐과 및 후속조치

제17조(폐과된 학과의 운영) ① 학과 폐과 시 학칙에 이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 및 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② 학과 폐과 시 학칙에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어 학과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소속변경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학습권의 보장) ① 학과의 폐과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학과의 재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전과를 허용한다.

③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한 경우 이전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한다.

④ 전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의 문제로 인해 졸업시까지 전공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을 졸업기준에 포함하여 사정할 수 있다.

제19조(폐과 교원의 신분조치) ① 폐과 학과의 소속 교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폐과 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강사의 임용기간은 재학생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생 존속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2. 11. 01.
			개정번호	4

제20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